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3-6호

따뜻한 강원도 평생학습사회를 위한

강원도 평생교육 운영지원 공모사업 공고

- 성인문해교육, 장애인 평생교육, 행복한 나이듦 -

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(이하 "인평원"이라 한다.)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「**강원도 평생교육 운영지원 공모사업**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,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·단체에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2월 14일

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

1. 사업목적

○ 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한 평생교육 사각지대 해소

○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학습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개선

2. 사업기간

○ 2023. 4월 ~ 10월 ※ 단, 성인문해교육 분야는 12월까지 운영가능(12. 8.까지)

3. 공모개요

분야		신청대상	주요내용	지원규모
계				
성인문해교육	기초문해교육 운영지원	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관·단체 중 **최근 3년간 문해교육을 1개 강좌 이상 운영한 경력**이 있는 기관·단체	한글, 영어, 수학 등 기초문자 해득을 위한 교육과정	총49,000천 원 (7개소 내외)
	생활문해교육 운영지원		일상생활을 위한 생활기술 및 정보습득을 위한 강좌 (체험, 실습 포함)	총21,000천 원 (7개소 내외)
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지원		장애인대상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, 장애인 기관·단체	도내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지원	총30,000천 원 (10개소 내외)
행복한 나이듦 평생학습 지원사업		도내 교육·복지·문화 관련 기관 (단체) 및 기타 비영리민간단체	어르신에게 학습문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활동으로 연결	총50,000천 원 (10개소 내외)

4. 지원기준 ※ 분야별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[참고1] 확인

○ 운영대상 : 사업별 해당 대상자 10인 이상

○ 운영기간 : 2023. 4월 ~ 10월 ※ 단, 성인문해교육 분야는 12. 8.까지 사업종료

○ 운영횟수 : 최소 8회차 이상(행복한 나이듦 분야 제외)

○ 지원조건 : 보조금의 5%이상 자부담 편성

- (성인문해교육 분야 한정) 자부담 외 시군비 대응투자시 가산점 부여

○ 지원항목 : 강사비, 홍보비, 교재비, 운영비(재료비 포함)

- **분야별 지원항목에 차이**가 있으며 세부기준과 단가는 [참고] 확인

○ 지원제외

- 최근 5년 동안(2018~2022) 공모사업 보조금을 반환한 경력이 있는 기관·단체

※ 사업집행잔액 및 이자반납, 코로나-19 등 환경적·사회적 요인에 의한 미운영은 제외

-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
- 특정기관·단체·정당의 이익사업 또는 종교적·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
- 친목도모를 위한 단순한 동호회 활동

5. 접수방법

○ 접수기간 : 2023. 2. 14.(화) ~ 2. 28.(화)

※ 마감일 18:00까지 원본서류가 도착한 경우만 유효

○ 접수방법 : 전자우편으로 한글파일 접수 후 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서류 우편접수

- (전자우편)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의 한글문서
- (우편접수) 전자우편으로 접수한 모든 서류의 원본(직인날인 포함)

○ 제출서류 : 신청공문, 신청서*, 단체소개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제공·이용동의서

○ 제 출 처

지원분야	전자우편	우편(또는 방문)
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	idpeal@gwdinje.kr	(24455)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89, 1층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(지원분야) 담당자 앞
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지원	nys3929@gwdinje.kr	
행복한 나이듦 평생학습 지원사업		

6. 심사 절차 및 선정발표

○ 심사절차

① 적격여부 심사		② 중복지원여부 확인		③ 사업계획서 심사
제출서류 구비사항, 자부담 등 필수 자격요건 검토	⇨	동일 강좌에 대한 국·도·시군비 예산지원 여부 확인	⇨	심사기준에 따른 사업계획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
내부심사		**도, 교육청, 시군 협조**		**심의위원회 심사**

○ 선정기준 : 사업계획(30), 사업실행(50), 효과성(20)

평가지표		배점	평가세부내용
총 계		100	(문해교육 분야) 가점포함 110
사업계획 (30)	공익성	10	사업 제안의 배경과 필요성 및 공익성
	이해도	10	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
	적합성	10	교육 내용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
사업실행 (50)	구체성	10	추진방향 및 세부 프로그램 구성의 구체성
	독창성	10	학습자 요구 및 특성 반영 여부 및 운영의 독창성
	가치	10	평생교육으로서의 가치
	예산타당성	10	사업비 산출의 타당성
		10	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
효과성 (20)	사업성과계획	10	학습자 관리 및 성과관리방안의 구체성
	효과지속성	10	학습결과의 기대효과의 타당성 및 교육 효과의 지속성
(문해분야) 가점사항	시군비 대응투자 여부	10	자부담 외 시군비 대응투자 여부 ※ 금액 상관없이 대응투자 있을 경우 10점 부여

○ 결과발표 : 3. 15.(수) 예정 / 인평원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관 개별통보

7. 사업추진일정(안)

○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: 3. 15.(수) ~ 3. 21.(화)

※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사업목적 및 내용(규모 포함)과 당초 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변경 된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

○ 보조금 교부 : 2023. 3. 24.(금) 예정

○ 개설보고서 제출 : 2023. 4월 중(사업개시 이후 1주일 이내)

○ 착수협의회 및 담당자교육 : 2023. 4월 중

○ 사업수행기관 중간(현장)점검 : 2023. 7 ~ 8월

※ 중간점검은 1회 정기 현장점검으로 진행되며 단, 행복한 나이듦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한해 월별보고서(사업 진행내용, 사업비 집행율 등)를 제출해야 함

○ 보조사업 종료

- (장애인 평생교육, 행복한 나이듦 평생학습) 2023. 10. 31.(화)까지
- (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) 2023. 12. 15.(금)까지

※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(11. 30.)

○ 집행잔액 반납

- (장애인 평생교육, 행복한 나이듦 평생학습) 2023. 12월
- (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) 2024. 1월

8. 유의사항

○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조정되어 교부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정된 예산에 맞추어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○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
○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○ 사업계획서와 예산 산출은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, 공모분야별로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[참고]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담당자교육 참석, 우수사례 발표, 성과물 제공 등 네트워크 및 성과공유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
○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교부된 사업비는 전액 환수하며 차년도 사업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○ 사업별 문의처

- (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) 교육운영팀 정슬기, ☎ 033-254-7777 / 내선 258
- (장애인, 행복한 나이듦) 교육운영팀 노이선, ☎ 033-254-7777 / 내선 254

붙임 1. 사업신청서류 서식1(성인문해교육, 장애인 평생교육)

2. 사업신청서류 서식2(행복한 나이듦 평생학습)

3. 문해교육 도비 공모사업 지원 확인서(해당기관에 한함)

[참고1] 분야별 지원개요와 운영요건

①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
- 기초문해교육 운영지원, 생활문해교육 운영지원 -

○ 지원분야 : 2개 분야(기초문해교육 운영지원, 생활문해교육 운영지원)

○ 운영주체 : 도내 문해교육을 운영중인 **비영리 민간기관·단체**

○ 운영기간 : 공모사업 선정일 ~ 12. 8.(금) ※ 사업결과보고 : 12. 15.(금) 한

○ 운영대상 : 문해학습자 10인 이상 ※ 현재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 대상

○ 주요내용 및 지원금액

분야	주요내용	최소운영시수	지원상한액(개소당)	지원규모
기초문해 분야	한글, 영어, 수학, 등 기초문자해득강좌 및 초·중·고 검정고시 강좌	주2회, 총 60시간 이상	7,000천 원	7개소 내외 (49,000천 원)
생활문해 분야	일상생활을 위한 생활기술·정보습득을 위한 강좌 및 체험활동	8회차 이상	3,000천 원	7개소 내외 (21,000천 원)

○ 지원항목 ※ 반드시 아래 항목에 맞추어 예산계획서 작성

지원항목	주요내용
강사비	- 강좌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(내부직원 강사비 제외) - 강사로만 구성된 단체일 경우 행정직원을 제외한 회원강사에 한하여 지급 가능 - 무급강사, 자원봉사 등 무급으로 근로하는 경우 교통비 지급가능(1인기준 월 최대 150천원)
홍보비	- 기관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(현수막, 홍보지 제작 등) ※ 기관의 홍보물품, 기념품 등의 제작비용 제외
교재비	- 강좌 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교재 구입비용(시판교재, 제본교재 등)
운영비	-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재료비 - 강의와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임차비(운영개월수만큼 책정 가능) ※ 단, 임차비는 '문해교육 전담기관[1]' 및 '야학' 한정 집행 - 프로그램 운영 중 **체험학습 및 각종행사** 등 운영을 위한 비용(강의식 집합교육 제외) · 체험학습 입장료, 행사 식비(최대 8,000원), 다과비(최대 3,000원) · 행사 참가자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비(**유류비 지원 불가**) -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지원물품(학용품 등)

○ 기타사항

- 자부담 외 시군비 대응투자시 가산점 부여
- 보조금 교부 이전 사업개시는 가능하나 지출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

○ 제출서류 : [붙임1], [붙임3]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

1) 문해교육 전담기관 : 전체 운영 프로그램 중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90%이상인 기관

②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지원

○ 운영주체 : 장애인대상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, 장애인 기관·단체
- 평생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
-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 민간장애인 단체
-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장애인 기관·단체
- 일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
- 장애인 관련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

※ 자치단체 소속기관(시군청, 평생학습관, 주민센터 등)은 신청불가

○ 운영기간 : 공모사업 선정일 ~ 10. 31.(금) ※ 사업결과보고 : 사업종료 1개월 이내

○ 운영대상 : 만 19세 이상 성인장애인 10명 내외

※ 비장애인과 통합교육 가능, 장애학습자 비율 70%이상 필수(상황에 따라 장애인 증빙서류 요구가능)

○ 주요내용 및 지원금액

주요내용	최소운영시수	지원상한액 (개소당)	지원규모
도내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지원	8회 이상 ※ 단순 체험행사 지원불가	3,000천 원	10개소 내외 (30,000천 원)

※ 신청현황과 예산내역을 검토하여 지원액 조정 가능

○ 지원항목 ※ 반드시 아래 항목에 맞추어 예산계획서 작성

지원항목	주요내용
강사비	- 강좌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(내부직원 강사비 제외)
교재비	- 강좌 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교재 구입비용(시판교재, 제본교재 등)
재료비	- 강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구입비(사무용품 구입 제외)
운영비	▪ 교육운영비 - 강좌운영를 위한 현수막 제작 비용 - 타은행 송금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예비비(10,000원 이내) - 코로나 방역물품(50,000원 이내) **※ 코로나방역물품 구입은 2023년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지원사업에서만 지출 가능** **('23.1.20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제외 감염취약시설)** ▪ 체험운영비 - 외부 실습, 체험학습을 위한 차량임차비, 입장료 - 체험 중 식비, 다과비 **※ 일반 집합강의일 경우 식비, 다과비는 불가하며, 자부담으로 편성가능**

○ 제출서류 : [붙임1]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

③ 행복한 나이듦 평생학습 지원사업

○ 지원분야 : 행복한 노년을 위한 취미, 여가, 건강 및 자기계발 평생학습프로그램

○ 운영주체

- 도내 교육·복지·문화 관련 기관(단체) 및 기타 비영리민간단체
- 노인복지관, 노인요양시설 및 대학 평생교육원 등

○ 운영기간 : 공모사업 선정일 ~ 10. 31.(금) ※ 사업결과보고 : 사업종료 1개월 이내

○ 운영대상 : 도내 60세 이상 어르신 우선(베이비부머 참여가능)

○ 주요내용

- 사회참여 및 세대 간 교류로 이어지는 지역 내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
- 대학과 연계하여 고령층의 수요가 높은 분야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
- 준전문가 수준의 역량을 요하는 실버인재양성 프로그램 제공

<프로그램 예시>

구분	세부내용
교육형	① 교육(장기): 기술 습득을 목표로 장기 교육+참여자 워크숍+발표회 등으로 구성 ② 교육(단기): 다양한 평생학습을 통한 평생학습의 즐거움 발견 등을 목표로 단기 교육(2~3개)+참여자 간담회+워크숍 등으로 구성 – 예시: 매듭공예(8차시)+짚풀공예(8차시)+한지공예(8차시) ③ 장르+장르(융복합) 교육: 2가지 이상 장르를 복합한 교육 – 예시: 민요+글쓰기: 민요를 통한 나의 인생 노래를 만들어보기 위해, 민요 기본 교육과 함께 글쓰기 등과 관련한 인문학 교육 진행
동아리형	① 동아리 활동: 기존 동아리 자조모임+보수교육+멘토링(컨설팅)+봉사활동 또는 공연 등으로 구성 ② 동아리 연합(2개 이상) 활동: 문화시설 등 소속 어르신 동아리 활성화를 목표로, 개별 동아리의 자조모임 및 보수교육과 함께 동아리 간 교류 및 연계 활동(합동 공연, 워크숍, 간담회 등)으로 구성

○ 지원금액 : 총 50,000천 원 ※ 기관(단체)별 최대 5,000천 원 이내 지원

○ 기타사항

- 지역의 자원과 특성 반영사항 반드시 명시
- <u>보조금의 5% 이상 자부담 편성</u> 필수(5,000천 원 신청할 경우 250천 원 자부담 편성)

○ 제출서류 : [붙임2] 행복한 나이듦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

[참고2] 예산지원항목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

가. 예산지원항목

항목	지원내용	비고
강사비	**[공통]** ·강좌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 ·강사비 단가는 하단의 지급기준 참조하여 책정 ·강사로만 구성된 단체일 경우 행정직원을 제외한 회원강사에 한 하여 지급 가능 ·교통비(실비) 별도 책정 가능 ※ 상근임직원 강사비 지급 불가(2023년 강원도 보조금 운영매뉴얼 준용) **[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 분야]** · 무급강사, 자원봉사 등 무급으로 근로하는 경우 교통비 지급가능 (1인기준 월 최대 150천원)	
교재비	·강좌 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구입, 교재발송 비용 ·시판 교재일 경우 학습자의 130% 까지 가능 ·제본 교재일 경우 학습자의 150% 까지 가능	(예)학습자 20명일 때 시판교재:26권까지, 제본교재:30권까지
홍보비	·강좌 홍보를 위한 현수막, 홍보지 제작 비용	
운영비	**[공통]** ·강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비, 재료발송비, 장소대관료 등 ·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·온라인 교육 운영을 위한 온라인 회의 플랫폼 사용료 등 ·강좌에 포함된 행사(실습, 체험학습 등)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, 입장료, 장소대관료 등 지원 가능(그 외 지원 불가) **[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 분야]** ·강의와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임차비 (운영개월수만큼 책정 가능) 단, 임차비는 '문해교육 전담기관[2]' 및 '야학' 한정 집행 **[장애인 평생교육 분야]** ·코로나 방역물품(50,000원) 이내 ('23. 1. 20.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제외 감염취약시설)	

[참고] 보조금으로 편성이 불가능한 항목

1.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한 항목

- 집합강좌 중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비(다과 포함)
- 집합강좌 중 학습자 수송을 위한 차량임차비, 차량유류비
- 행사부대경비 : 이체수수료, 시상금(상품권) 등

2. 보조금, 자부담 모두 편성이 불가능한 항목

- 사무실 운영경비 : 직원급여, 사무실 임대료, 시설 유지비
- 자산취득경비 : 사무기기 구입
- 내부직원 강사료 : 사업수행기관의 내부직원(원장 포함)이 강사로 들어갈 경우 강사료 지급 불가
-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의 운영경비

2) 문해교육 전담기관 : 전체 운영 프로그램 중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90%이상인 기관

나. 예산편성관련 강의시간 산출기준

강의시간	1시간 이하	1시간 초과 ~ 2시간 이하	2시간 초과 ~ 3시간 이하	3시간 초과 ~ 4시간 이하
산출기준	1시간	2시간	3시간	4시간

※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,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, **즉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**

다. 강사비 지급기준

등급	적용대상		지급기준(만원)	
	일반	공직자 등	최초 1시간	초과 매시간
특1급	-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-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- 기업 회장	- 장관급* - 광역자치단체장* - 대학총장(장관급) - 국회의원*	40	30(20*) (시간보상수당* 30)
특2급	- 전직 차관(급) - 전직 공기업 대표 - 전직 기초자치단체장	- 차관급, - 대학총장(차관급) - 기초자치단체장 - 공직유관단체장	30	20 (시간보상수당 20)
1급	-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(의장 포함) - 유명 예술인·종교인,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인사 -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, 중역 -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의사,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-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(취미·소양·외국어·전산 강사 제외) -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	- 4급이상 공무원 - 지방의회의원 - 대학의 교수 - 공직유관단체 임원 (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) - 언론인	25	12 (시간보상수당 12)
2급	- 전직 5급 이하 공무원,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 -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- 원어민 어학 강사 -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	- 5급이하 공무원 - 대학의 강사 등 - 공직유관단체 직원	15	8 (시간보상수당 8)
3급	- 외국어, 전산 등 강사 -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공무원 - 교육기관 3년 이상 강의 경력자		10	5 (시간보상수당 5)
4급	-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		8	4 (시간보상수당 4)
5급	-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		6	3 (시간보상수당 3)

-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가능(인평원 사전협의 필요)
- '공직자 등'이란 「청탁금지법」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,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
  ※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: 40만원(1시간을 초과할 경우 총액은 상한액의 150%까지 가능)
  ※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: 100만원(1시간을 초과할 경우 총액은 상한액의 150%까지 가능)
- '시간보상수당'은 원거리 강사의 왕복이동시간 보상을 위한 수당(정액)을 의미하며 1일 1회 지급가능하고 공직자 등의 경우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,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가능
  ※ 단, 시간보상수당은 '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' 4개 지역의 출강 강사에 대해서는 미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시·도의 출강 강사에게만 지급 가능함
- 관외 강사에 대한 교통비는 대중교통(시외버스, 고속버스) 기준의 실비수준으로 지급 가능
-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
- 위 사항 중 정해지지 않은 기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인평원으로 유선문의 요망

라. 기타사항

○ 공모사업 선정기관은 사업운영을 위해 별도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.

※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통장사본 첨부

○ 보조금 집행은 기관카드(체크) 및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.

○ 예산집행중 발생하는 이자는 사업종료 후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.

○ 강사료 지급급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천징수 해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최종선정 후 착수협의회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.